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126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8. 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가 2022. 9. 22.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22. 9. 28. 접수 제17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에 대하여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인 C에 대하여 D의 상속개시는 물론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양수금채권에 기하여 「4,621,417원 및 그 중 2,221,291원에 대하여 200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확정된 지급명령을 보유한 C의 채권자인 사실, D는 2022. 3. 3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C, 피고를 포함한 직계비속 9인 중 2022. 6. 28.자 상속포기신고를 한 직계비속 2인을 제외한 직계비속 7인이 있었던 사실(즉 C의 상속지분 1/7), 위 D의 상속인 전원은 2022. 9. 22. D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22. 9. 28. 접수 제17875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는 아무런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재산도 없었던 반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등 이 건 채무 외에도 4,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1) 앞서 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권리가 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매각뿐만 아니라 재산의 처분행위로서 같은 실질을 가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C의 유일한 부동산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불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협의분할 중 C의 상속지분 1/7에 관하여서는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C에 대한 대여금 7,200,000원과 상계한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는 C에게 1년 내에 상환받기로 정하여 2020.

2. 14. 6,000,000원, 2020. 2. 18. 1,200,000원 총 7,2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C가 기일 내에 상환하지 않아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위 상속지분과 대여원금을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을 자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지급받았음을 주장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먼저 피고와 C의 인적 관계, C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을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로부터 일방적인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원물반환) 피고는 C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 및 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잔액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대물변제의 가액은 2,329,743원에 불과한바 이는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7,200,000원에 비하여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그와 같은 채권을 보유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와 C의 인적 관계가 긴밀한 점, 대물변제 금액이 이로써 소멸하는 채권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물변제를 수령하는 채권자가 선의의 채권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판사 이디모데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전라북도 남원시 E 대 354 m²
2. 위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위성글지분 단층 주택 80.16 m². 끝.

1) 같은 부동산에 관한 다른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법원 2022가단12863)을 같은 날 선고하였다(현시점에서는 어떤 판결이 먼저 확정되어 이에 따른 재산의 회복을 마친 상황이 아니어서 어느 사건도 권리보호의 이익 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